

NEWS LETTER

2024-11-15

Legal Issue

- 에어드롭(airdrop)으로 확대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
- [인용 보도의 법적 책임과 윤리]
SNS 캡처 인용, 어디까지 합법일까?

MINWHO News

- 법무법인 민후,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성료
-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



Legal Issue

에어드롭(airdrop)으로 확대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

김경환 대표변호사

에어드롭은 금전적 지급을 받지 않고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모든 사람이 에어드롭을 받는 표준 에어드롭, 특정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받는 바운티 에어드롭, 기존 코인 또는 토큰 홀더가 받는 홀더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통점은 토큰이나 코인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2018년 토마호크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토마호크의 ICO를 홍보하면 대가로 TOM 토큰을 지급하는 이른바 '바운티 프로그램'이 연방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비추어 볼때 증권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 SEC의 판단으로 2024년 커다란 사건이 파생되는, 텍사스의 작은 의류회사 베바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자체 발행한 BEBA 코인을 고객에게 무료 배포했다. 그런데 베바사의 행위에 대해 SEC는 이러한 에어드롭은 증권의 공모에 해당, 증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바사는 강력 반발했고, 비영리 단체 디파이 교육 펀드가 가세했다. 이들은 공동 원고가 돼 2024년 3월 SEC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첫째, BEBA 토큰 자체가 투자 계약이 아니며 BEBA 토큰의 무료 에어드롭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둘째, SEC가 공론화 절차없이 비밀리에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고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는 증권 거래"라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기업이 SEC를 상대로 적극적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두번째로, 올해 2월 디지털자산회사 레지렉스는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크립토 자유 연합과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타겟팅”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바사의 소송에 대해 SEC는 7월 SEC가 베바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위협적 규제 조치가 행한 적 없고,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는 규제 압박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어겼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기각을 구하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10월 28일 미국 블록체인 협회·암호화폐 혁신 협의회·비영리 단체, 코인베이스, 멀티코인 캐피탈, 패러다임,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베리언트 등 암호화폐 및 벤처 투자사들은 베바사의 소송을 지지하며 법정 조언서(아미쿠스브리프)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소송은 확대일로로 가게 됐다.

이들은 법정 조언서에서 SEC는 최소 네 차례의 집행 조치를 통해 에어드롭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왔고, 베바사의 에어드롭은 무료이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의 '투자'를 위한 자금 투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SEC가 베바와 같은 회사들이 겪는 집행 위협과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에어드롭이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 올랐는 데, 그 기저에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입법 조치가 시급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바,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수개월, 이제라도 토큰증권 등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인용 보도의 법적 책임과 윤리] SNS 캡처 인용, 어디까지 합법일까?

양진영 대표변호사

‘갈무리’는 일반적으로 정리, 마무리, 완료라는 개념을 내포한 단어로, 물건을 정리·보관·간수하거나, 일을 처리해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최근에는 특정 영상, 문서 등의 자료 화면, 소셜미디어 화면을 캡처한 것을 갈무리라고 표현한다.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기사 소재를 얻기 쉬워지면서, 타사 자료나 소셜미디어·SNS 자료를 갈무리해 인용 보도하는 기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사에 캡처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캡처’, ‘OOO 사진 인용’ 등으로 언급하거나, 유명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SNS 게시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무리 인용 보도에 저작권, 초상권 등의 문제는 없을까.

먼저, 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아본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영상·어문·이미지·사진 저작물 등 대부분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따라서 타사의 문서·영상 자료,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거나, 소셜미디어, 화면 등을 캡처해 기사에 실는 행위는 전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자료의 저작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관해 허락을 얻은 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다만, 저작권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인지 여부에 대해,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기사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을 갖고 있지만, 언론사의 영리 목적을 배제할 수 없어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언론 기사의 인용 보도에 대해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적용도 가능하나, 저작권법 제28조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언론사의 저작물 이용이 전부 면책되기는 어렵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자료를 인용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판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사에 자료를 인용한 측은 공정이용을 주장하겠지만,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성격, 기사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기사에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배상한 사건을 참고할 만하다. 문제가 된 기사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목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실렸는데 단지 페이스북 캡처라고만 적시되어 있었다. 그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작가는 동의 없이 사진이 기사에 사용됐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위 사건에서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000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비판하는 피고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다. 임 목사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인 논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진이 사용된 이상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갈무리 인용 보도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권자를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발췌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권리자, 명의자, URL 주소 등을 표기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유명인이 아닌 경우 SNS 언급 시 계정을 익명화해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 불쾌감을 느꼈을 때 발생하므로, 부정적인 기사, 명예훼손성 기사 등에 대해서는 특히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인용 보도된 갈무리 자료에 얼굴이나 음성 등이 나타나는 경우 ‘초상권’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초상권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보호된다(서울고등법원 1989.1.23 선고 88나38770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은 일반인, 연예인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지만, 법원은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 등에 관해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따라서 유명인의 공개된 게시물이나 자료를 캡처한 것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유명인이라도 비공개 계정에 업로드된 것이라거나, 일반인의 게시물을 활용할 때는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커지므로 인용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작권 분쟁과 마찬가지로 초상권 분쟁도 부정적, 명예훼손성 기사에서 더욱 문제가 되므로, 얼굴이 드러나는 자료를 인용할 때 해당 인물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 없이 사진 자료를 활용했다가 초상권, 명예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갈무리 자료를 통해 손쉽게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기사가 늘어나면서, '기자하기 쉽네', '복붙 기사' 등의 조롱 여론도 생겨났다. 저작권과 초상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한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이 지속된다면 언론의 신뢰성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 저작권 및 초상권 존중, 정보의 신뢰성 확보, 언론 윤리 준수 등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보도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5일 '신기술 경영과 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김경환·양진영·원준성 대표변호사, 현수진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원준성 대표변호사는 첫 번째 발표에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의 보호'를 주제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및 이용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업자 영향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현수진 파트너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및 자문사례 및 법 개정 이후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구법에 따른 유권해석 (금융감독원 법령해석 사례) 및 법무법인 자문사례, 개정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자별 대응방향 및 준비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법적이슈와 대응방안'을 강연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와 대응방안'을 통해 증권형 토큰 등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관한 관련 규제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개정된 현행법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했으며, 추후에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지식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세미나 영상 및 관련 자료 바로 보기

<유튜브 영상>

[\[법무법인 민후 세미나\] IP 지식재산권 분쟁, AI 신기술과 법률문제, 법무법인 민후가 지식을 공유합니다.](#)

<강연 자료>

[김경환 대표변호사-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와 대응방안](#)

[양진영 대표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법적이슈와 대응방안](#)

[원준성 대표변호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의 보호](#)

[현수진 파트너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및 자문사례 및 법 개정 이후의 대응방안](#)

MINWHO News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다른 피고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통해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